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5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회계법인 합병·분할 관련 FAQ

세무 및 법률정보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법인 합병.분할 관련 FAQ

[출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FAQ, 2019. 5. 16]

회계법인 합병 관련 FAQ

1. 회계법인 합병 관련 FAQ

자유감사 계약승계

(1) 자유감사 계약승계

Q: 합병 전 법인이 체결한 자유감사 계약을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합병의 효과에 따라 합병 전 법인의 자유 감사계약은 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지정감사 계약승계

(2) 지정감사 계약승계

Q: 합병 전 법인이 체결한 지정감사 계약을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합병의 효과에 따라 합병 전 법인의 지정 감사계약은 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3)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Q: 회사가 합병 전 법인이 체결한 감사계약을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 10 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법정기한 후에는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이 합병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감사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지정 요건 및 지정점수 승계

(4) 감사인 지정 요건 및 지정점수 승계

Q: 합병 전 법인이 속한 군(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 2 호의 표에 따른 구분) 및 감사인 점수를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4)-1. 합병 후 차기 산정기준일(8.31.)까지의 감사인 지정

회계법인간 합병이 발생할 경우, 차기 산정기준일 전까지는 감사인 지정점수와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병 전 각 법인들의 지정순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배정)하고, 실제 지정통지는 합병 후 법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은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4)-2. 차기 산정기준일의 지정점수 산정 및 지정군 분류

합병일 이후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차기 산정기준일)에는 합병 전 각 법인의 전년도*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합병 후 법인의 지정점수를 산정하고 지정군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일이 '19.3.31.인 A 법인과 B 법인이 '19.7.1.에 합병할 경우, '19.8.31.(차기 산정기준일)에는 A와 B법인의 '19.3.31. 실적(매출 등)을 합산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승계

(5)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승계

Q: 합병 전 법인의 지정제외점수를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5)-1. 합병 후 차기 산정기준일(8.31.)까지의 지정제외점수 사용방식

차기 산정기준일 전까지는 합병 전 각 법인들의 지정순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배정)하고, 각 법인의 지정제외점수 사용방법도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과 B 법인이 '19.4.1.에 합병할 경우, 차기 산정기준일 전까지는 기존 A와 B법인의 지정제외점수를 각각 사용

A: (5)-2. 차기 산정기준일 이후 지정제외점수 사용방식

피합병법인의 잔여 지정제외점수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차기 산정기준일 이후에는 각 법인의 잔여 지정제외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합니다.

직전 지정감사인을 합병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제한여부

(6) 직전 지정감사인을 합병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제한여부

Q: 직전 사업연도에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회계법인과의 당해년도 자유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

A: 직전 사업연도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회계법인과는 당해년도 자유감사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전 지정감사인에게 합병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제한여부

(7) 직전 지정감사인에게 합병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제한여부

Q: 회사와 자유감사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합병법인)에 합병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지정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유감사계약이 제한되나요?

A: 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합병법인)에 합병된 후에 합병법인은 지정감사를 했던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전 자유감사인을 합병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여부

(8) 직전 자유감사인을 합병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여부

Q: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의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회계법인은 해당회사의 당해년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자유감사인에게 합병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여부

(9) 직전 자유감사인에게 합병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여부

Q: 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인데, 직전 사업연도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 합병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자유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피합병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직전 사업연도에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합병법인)에 합병된 경우, 합병 후 회계법인 전체가 해당회사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승계

(10) 1 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승계

Q: 합병 전 법인에 대한 (지정기피 등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제외 효과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원칙적으로 합병 전 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 효과는 제한기간 동안 합병 후 법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감사업무제한조치 승계

(11) 감사업무제한조치 승계

Q: 합병 전 법인에게 내려진 감사업무제한조치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원칙적으로 합병 전 법인의 감사업무제한 조치효과는 제한기간 동안 합병 후 법인 전체에 적용됩니다.

회계법인 분할 관련 FAQ

2. 회계법인 분할 관련 FAQ

자유감사 계약 승계

(1) 자유감사 계약 승계

Q: 분할 전 법인(분할회계법인)이 체결한 자유감사 계약을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승계합니다.

지정감사 계약승계

(2) 지정감사 계약승계

Q: 분할 전 법인(분할회계법인)이 체결한 지정감사 계약을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승계합니다.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3)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Q: 회사가 분할 전 법인(분할회계법인)이 체결한 감사계약을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감사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 10 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법정기한 후에는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이 분할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감사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지정 요건 및 지정점수 승계

(4) 감사인 지정 요건 및 지정점수 승계

Q: 분할 전 법인(분할회계법인)의 지정요건(손해배상공동기금 포함) 및 지정점수를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4)-1. 분할 후 차기 산정기준일(8.31.)까지의 감사인 지정

회계법인의 분할이 발생할 경우, 차기 산정기준일 전까지는 감사인 지정점수와 순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 전 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존속법인에게만 분할 전 법인의 지정순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배정)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존속법인의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은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5)-2. 차기 산정기준일의 지정점수 산정 및 지정군 분류

분할 이후 산정기준일(차기 산정기준일)이 도래할 경우, 전년도(분할이전) 실적을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시켜 지정점수를 산정하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을 분류합니다.

*분할존속법인의 지정제외점수는 다른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후 실적만을 고려하여 지정점수를 산정하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을 분류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실적(매출액.감사대상 상장사 수) 승계

(5) 직전사업연도 실적(매출액.감사대상 상장사 수) 승계

Q: 분할 전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감사대상 상장사 수를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 전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실적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실적(매출액.감사대상 상장사 수)으로 인정되고, 분할 후 신설법인의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승계

(6)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승계

Q: 분할 전 법인의 지정제외점수를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 전 법인의 지정제외 점수는 분할을 이유로 분할존속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승계할 수 없습니다.

직전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법인과의 자유감사계약 제한여부

(7) 직전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법인과의 자유감사계약 제한여부

Q: 직전 사업연도에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한 경우 회사는 분할 후 법인과 당해연도 자유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A: 직전 사업연도에 지정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 한 경우, 회사는 지정감사계약을 이전받은 분할 후 법인과 자유감사계약 체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계약상 지정감사계약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분할 전 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 존속법인과 자유감사계약 체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법인에 대한 당해 지정 제한여부

(8) 직전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법인에 대한 당해 지정 제한여부

Q: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한 경우 분할 후 법인에 대한 당해연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

A: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분할한 경우, 자유감사계약을 이전받은 분할 후 법 인은 해당회사에 대한 당해연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계약상 자유감사계약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분할 전 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 존속법인은 해당회사에 대한 당해연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승계

(9) 1 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승계

Q: 분할 전 법인에 대한 지정기피 등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제외 효과는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 전 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외 효과는 분할 전 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존속법인에게 적용되고, 분할신설법인에게는 감사인지정제외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업무제한조치 승계

(10) 감사업무제한조치 승계

Q: 분할 전 법인에게 내려진 감사업무제한조치는 분할 후 법인이 승계하게 되는가요?

A: 분할 전 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사업무제한조치는 분할 전 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존속법인에게 적용되고, 분할신설법인에게는 감사업무제한 조치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5.3.~'19.6.12, 40일) 후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19년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등 대손금 인정(법인령 §19의2①)

현 행	건 의 안
□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추 가 >	□ 대손금 범위 확대 (좌 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영 시행 이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는 '19.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1.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코스피	0.15%	코스피	**0.10%**
코스닥	0.30%	코스닥	**0.25%**
코넥스	0.30%	코넥스	**0.10%**
K-OTC	0.30%	K-OTC	**0.25%**

<개정이유> 투자자 세부담 완화 등

<적용시기> '19.6.3.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권 양도일은 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결제일 기준(증권거래세법 §5 및 동법 시행령 §2) →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2019.04.1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04.1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